

# 의 정 정 보

---

2005 - 14 7. 27

## 목 차

---

I. 중앙기관 정보	1
II. 타 시·도 의회동향	4
III. 입법예고 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

# I. 중앙기관 정보

## ① 문화관광부, 2006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선정·발표

- 문화관광부는 2006년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로 ‘함평나비축제’ 등 11개 축제를 선정 발표하였다.
- 문화관광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95년부터 해마다 지속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축제이다.
- 2006년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함평나비축제’ ‘한산모시축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등 11개 축제를 대표 및 유망축제로 선정하였으며, 대표 및 유망축제에 대한 세부등급은 올 12월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2006년도 문화관광축제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축제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축제로 구분하여 올해 보다 예산지원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축제에 대하여는 축제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 축제 워크숍 등 전문가 양성,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조직망을 통한 축제 홍보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 참고로 2005년 상반기 19개 문화관광축제 추진 결과, 축제별 보고 자료에 의하면 1,398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특산물 판매 및 숙박, 음식점 수입 등 4,2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파생시킨 것으로 집계되어 문화관광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 고> : 2006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선정내역

- 총괄 : 선정축제수 18개 (대표·유망축제 11, 예비축제 7)
- 후보축제 : 2개 (대표·유망 1, 예비 1)

구 분	시.도별	축 제 명	2005년 등급	비고
대표·유망	대구	대구약령시축제	지역육성	
	경기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유망	
	강원	춘천마임축제	우수	
		인제빙어축제	유망	
	충남	한산모시문화제	지역육성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유망	
	전북	남원춘향제	지역육성	
		무주반딧불축제	지역육성	
	전남	함평나비축제	우수	
	경북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지역육성	
경남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지역육성		
소계		11개		
대표·유망 후보	전남	보성다향제	유망	
예비	서울	하이서울페스티벌	예비	
	강원	화천산천어축제	예비	
	전남	담양대나무축제	예비	
	경북	문경찰사발축제	예비	
	경남	지리산한방약초축제	예비	
	제주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예비	
	충북	전국음성품바축제	-	신규
소계		7개		
예비 후보	부산	광안리어방축제	예비	

## ② 농업기반공사, 금년 10월 농지매매사이트 운영

- 오는 10월부터 인터넷으로 전국의 농지시세와 매물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농지은행 포털사이트(farmlandbank.co.kr)가 운영된다.
- 농업기반공사는 이달 중 시범운영을 거쳐 도시민들의 농지소유가 가능해지는 오는 10월부터 사이트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 농업인 등은 사이트에 팔거나 임대할 농지를 등록할 수 있다. 도시민은 희망하는 농지를 선택, 매입신청을 하면 사이트 운영 주체인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는데, 다만, 농지매입이나 임대차계약 때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 사이트에는 지번별 농지의 시세현황과 거래동향, 농지가격 변동률 등이 그래프와 함께 실린다.
- 농업기반공사는 연말까지 사이트에 농가주택, 농업시설물, 농촌 관광 등의 정보도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민의 귀농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 지난 6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농이나 귀농 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은 10월부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산 뒤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전업농에게 5년이상 임대하면 농지소유가 가능하다.

## Ⅱ. 타 시·도의회 동향

### 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원 면책특권’ 건의

- 지난 7월 21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대구시의회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의 발언과 표결 뿐 아니라 이에 부수된 의정활동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되, 타인을 중상모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
- 협의회는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아 발언에 제약을 가져옴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됨과 아울러 의회 본래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기능이 제한을 받고 있다.” 며 건의 배경을 밝혔다.
-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면책특권 부여대상을 지방의원으로 넓히려 할 경우 사회적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사법적·행정적으로 추궁받지 않으며, 국회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으로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에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지방자치법에 신설해야 한다.

## ② 전북도의회, ‘보리파동’ 대책마련 촉구

-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영근의원 등 4명은 지난 7월 12일 잉여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보리파동에 대한 전북도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과 함께 삭발했다.
- 또한, 이 날 “보리파동 해결촉구를 위한 단식농성에 즈음하여”란 제목의 도의회 산경위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대안 없는 수매량 축소와 풍작으로 인해 작년에 이어 2년째 보리파동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가격지지를 위한 잉여보리 일부 수매 등 도와 시·군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의원들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간의 대책회의 추진 △30만 가마 이상의 보리수매를 통한 시중 보리가격지지 △추정 소요예산 100억원(매매 환수예상 75억원) 의 도 및 시·군 공동부담과 도의 예산확보 추진 △보리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③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의회 인턴교육’ 실시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지역의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 여성의 정치적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인턴교육”을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했다.
- 지방의회 인턴사업은 5명의 여성의원과 19명의 여대생들이 후원과 후견인 역할을 하는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모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 ④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연구 계약직공무원’ 채용

-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방의회 운영에 따른 입법정책연구개발 및 의정 홍보업무를 수행할 의회 계약직공무원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 지난 7월 5일 임용시험 공고하였다.
- 이번에 채용되는 분야는 입법정책 연구개발요원으로서 계약직 ‘나’급으로 환경, 도시건설, 경제과학,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5명 과 의정 홍보요원으로 계약직 ‘다’급 1명 등 모두 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 앞으로 채용되는 의회 계약직공무원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지방의회 운영 각 분야의 입법정책 연구조사 및 대안제시, 의정·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료수집, 의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⑤ 전북도의회, ‘새만금사업’ 대책마련 촉구위해 국회 등 방문

- 전북도의회는 지난 7월 7일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관련부처를 방문했다.
- 이 들 방문단은 국회 열린우리당과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민심을 전달하는 등 전북현안 해결을 거듭 촉구하였다.

### Ⅲ. 입법예고 법령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① 개정이유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2005.6.30. 국회 본회의 의결)으로 동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제 변경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② 주요내용

-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시·도에 두는“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게 됨에 따라“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삭제 함
-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 표시방법을 변경함
  -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을 소선거구에서 읍·면·동의 명칭을 붙여 사용하여 왔으나,
  -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구·시·군의 명칭을 붙여 표시하되, 선거구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 . . . .를 붙여 사용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위원회의 구성은 11인으로 하되 시·도의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 10인(분야별 2인)과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1인으로 함.

- 의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함
-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함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③ 의견제출

- 2005년 8월 4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주민제도팀장)에게 제출
-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02-3703-5443, FAX : 02-3703-5610)

## <참 고> : 입법 예고안 전문

대통령령 제 호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을 「공직선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구의 명칭) 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시·군의 명칭을 붙여 표시하되 선거구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7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① 법 제24조 제11항에 의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구성은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8인으로 하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를 각각 2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비상근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는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업무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원장의 명의로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퇴직한 후에도 또한 같다.
- ⑨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시·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⑩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당해 시·도 소속